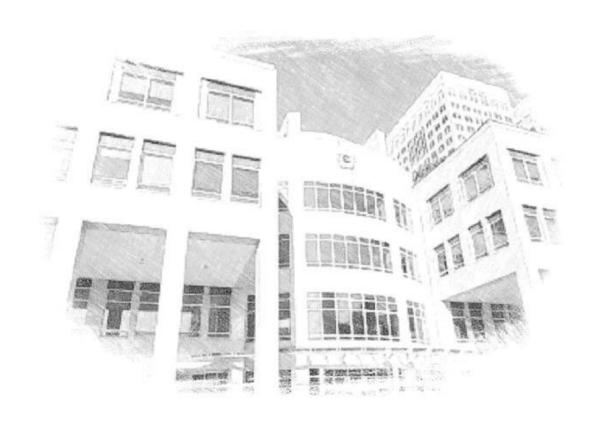


# 입법정책정보

-제26호-





0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0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0	

# 목차

I . 상위법령 제·개정1
1. 지방궁무원 복무규정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7
Ⅱ <b>.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b> ·······10
1.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10
2.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13
3.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14
<b>4</b> . 경상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16
Ⅲ <b>. 자치법규 참고정보</b> ·······19
Ⅳ <b>. 최신 외국 입법정보</b> 26
V.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8

# ▮ 상위법령 제·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로 한다.

별표 1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일"을 "20일"로, "15일"을 "2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 - 신・구조문 대비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④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⑭ (현행과 같음)

##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05.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5호, 2024. 0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제 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2.11.〉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삭제〈2017. 12. 29.〉

제10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21. 4. 9.>

-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삭제<2011. 2. 11.>

-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20.7.3.〉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⑤ 삭제 〈2019.2.15.〉
- 제15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 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목개정 2022.8.12.] <개정 2022.8.12., 2023.12.29.>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7조 삭제<2019. 12. 27.>

-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 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삭제〈2020.7.3.〉
  - ③ 삭제 <2017.12.29.>
  -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 ⑤ 삭제 〈2021.4.9.〉
  - ⑥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28.〉
  -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5.6.19.〉〈개정 2016.12.30., 2021.4.9., 2022.8.12., 2023.2.24., 2024.5.17.〉
  -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 ⑨ 삭제 <2019.2.15.>
  -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 ① 삭제 〈2021.4.9.〉
  - ① 삭제〈2020.7.3.〉
  - ③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

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2.15.> <개정 2024.5.17.>

제19조 삭제 <2011.2.11.>

제20조 삭제 <2019.12.27.>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 삭제 <2011.2.11.>

부칙 〈조례 제6235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 □ 제정・개정이유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 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 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 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 · 구조문 대비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생략)

-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 |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 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를 갖추어야 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 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12. (생략)

말한다.

- 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 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 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 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 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 ·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신 설〉

〈신 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 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 ⑧ (현행 과 같음)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시행 2025. 02. 28.] [대구광역시조례 제6254호, 2025. 02. 28., 제정]

# □ 제정이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와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운행이 대폭 증가하면서, 도심 지역에서 배달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 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의 소음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적정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 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음을 말한다.
  - 2. "자동차" 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동차 소음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2. 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
  - 3. 연도별 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

- 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소음관리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의 발생 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법 제36조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신고 하거나 고발한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지원
  - 2.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 3. 그 밖에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시 및 구·군의 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
  - 2. 대구경찰청 교통담당자
  - 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 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수시점검 담당자

-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구·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그 밖에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2, 28.] [광주광역시조례 제6516호, 2025, 02, 28., 제정]

## □ 제정이유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수요조사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광주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 2. 광주광역시의회
-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시행 2025. 02. 28.] [광주광역시조례 제6515호, 2025. 02. 28., 제정]

# □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 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료공영주차장" 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2. "장기방치 자동차" 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 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 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시민 순찰단 운영)** ①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순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시민 순찰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02. 24.] [경상북도조례 제5223호, 2025. 02. 24., 제정]

## □ 제정이유

최근 경상북도를 비롯한 국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경상북도 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주여성의 안전한 정착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
  - 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관련 상담사업과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2.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 3. 피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 4. 신변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 5. 이주여성 쉮터 등 보호 및 주거시설로 연계
  - 6.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7조(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 4.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 주여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 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Ⅲ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5-0038 /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 의뢰안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그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제5조) 및 행정기구 설치·개편시의 고려사항(제7조), 행정기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례안 제안 및 행정기구 축소·통폐합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는 한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통폐합 및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지는바(각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이미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없었던행정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각주: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에는 그 조직편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합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되는바(각주: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u>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 편성에 관한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0. 29. 의견제시 19-0304, 2017. 8. 23. 의견제시 17-0230,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4 참조).</u>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424 /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 □ 의뢰안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 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 □ 주요내용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일 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이 재직기간에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 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대구광역시조례"라 한다) 제16조제7항 전단에서는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 종전의해당연금법」 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말함)에따른 재직기간 또는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병역법에따른 현역병(제1호)등으로 복무한 기간은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 재직기간에산입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의 휴가 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다른 기관에서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해당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의 연월수와 대구광역시에 신규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현재까지의 연월수를 합산한 기간이 되는 것으로, 다른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9. 15. 회신, 의견제시 17-0207 참조). 기

한편,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부여되는 포상적 성격의 특별휴가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만을 같은 항 후단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대구광역시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동일한 기관에서 연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려는 취지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각주: 1997. 3. 18. 대구광역시조례 제320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당시 대구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 및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참조),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에서 재직기간 산정 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에서의 재직기간만을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 후단의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대구광역시조례 제16조제7항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는 당시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 ③ ~ ④ (생 략)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⑭ (생 략)

#### [공무원연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다.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 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 9. (생 략)
  - ② ~ ③ (생 략)
-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④ ~ ⑤ (생 략)

# ₩ 최신 외국 입법정보

# 독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연방의회 통과

## □ 주요내용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유럽의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2023년 6월 발효된 개정 지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해당 개정안을 독일법에 반영하는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 대응법률(TEHG-Europarechtsanpassungsgesetz 2024)」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참사원의 승인 후 2025년 3월 말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에 관한 유럽법대응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 항공 부문 배출권거래제 강화
- 독일 연료배출권거래법(BEHG)을 대체할 신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TS-2) 도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가적 시행 규정 마련

해운 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4년 배출량의 40%, 2025년 70%, 2026년 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공 부문의 경우, 총 허용 배출량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크게 감축되고, 비행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非)CO2 효과에 대한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연합 내로 수입될 경우,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기반한 탄소 가격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이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확장에 있어 독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 도입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이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기업들이 증가한 배출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실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전가될 우려가 있어,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수당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출체]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2025.01.31)

독일 연방정부 (2025.01.31.)

독일 연방의회 (2025.01.15.)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 주요내용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매입을 제안해 미국-유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은 북극 지역 내 안보 강화와 항로 개척,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들어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북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란드 등 북극의 가치가 제고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희토류 수입 다변화, 기후 및 환경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최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과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8월에도 같은 제안을 했을 정도로 그린란드 편입 의지가 강하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안보적 중요성 제고, 천연자원 확보, 북극항로 개척 등, 그린란드 등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란드 및 북극의 가치를 활용하려는 국가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유럽, 러시아, 중국까지 북극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그린란드 및 덴마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극 과학 기지를 설치하고 2010년대 들어 북극정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북극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의 신호탄으로, 향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도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의도의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변화를 전망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그린란드의 경제적 · 지정학적 중요성

#### (1) 트럼프 정부의 대(對)그린란드 정책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은 미국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25년 1월 12일, J.D. 밴스 (Vance) 당시 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안보와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그린란드 거래가 필요하

다고 언급했으며, 1월 30일에는 루비오(Marco Rubio) 국방부 장관이 그린란드 편입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1월 13일, 앤드류 오글즈(Andrew Ogles) 공화당 하원의원은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법안(Make Greenland Great Agai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린란드 매입 협상 권한 부여와 협상 후 의회의 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직후 메테 프레데릭센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 밀접한 협력"을 하겠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2025년 1월 트럼프와 전화를 한 후에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무테 에게데 (Múte Egede)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도 "그린란드는 매물로 나온 적도, 나올 수도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3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린란드는 미국이 그린란드 정치인에 대해 기부금을 보내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월 4일 그린란드의 정당이 그린란드에 거주하지 않는 기부자나 익명의 인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무역 분쟁과 NATO 분담금 갈등으로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EU 등도비판에 가세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국경 불가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반박했으며,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그린란드는 유럽 영토"이며 EU는미국의 국경 침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1월 26일, 로베르트 브리거(Robert Brieger) EU 이사회 국방위원장은 그린란드에 EU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 (2)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목적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편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 때문이다. 그린란드가 위치한 북극권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ICBM의 최단 루트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 경쟁과 관련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고자 1951년 툴레 공군기지(Thule Air Base)를 설치해조기경보 시스템과 공격용 미사일 체제를 구축해왔다.

둘째, 미국은 그린란드에 매장된 리튬, 희토류 등 광물 자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2019년 그린란드 정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2024년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그린란드의 원자재 가치는 2023년 EU가 지정한 34개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inerals) 중 25개가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미국은 기후 변화와 북극 해빙 가속화로 항해 가능 기간이 늘어난 북극항로와 북서항

로에 대해서도 이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북극항로의 운항 가능 기간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4~6개월에 불과했으나, 2050년경에는 연중 상시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유럽-아시아 간 해상 운송 거리가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약 30% 단축되며, 물류 비용도 2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2022년, 미국은 2013년에 발표했던 「극지방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NSAR)」을 개정했으며 2023년에는 'NSAR 실행계획'을 채택해, 그린란드 등 북극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 (3) 미국 외 국가들의 북극 정책

그린란드 등 북극 진출에 힘쓰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 EU는 2021년 10월에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할 수 있는 북극에 대한 EU의 관여 관련 공동 성명」을 체결하고, 2024년에는 「지속가능한 어업 파트너십 협정」을 연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개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도 2018년 일명 북극 실크로드 구상이라 불리는 '북극정책백서'를 발표하는 한편, 그린란드 광산 개발투자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북극정책을 확대 중이다. 북극 연안국인 러시아는 2008년, 2013년, 2020년 북극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으며, 2019년에는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하는 등 북극 관련 경제,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연안에서 핵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북극 연안 군사기지도 2005년에서 2025년까지 8개에서 21개로 늘렸는데, 동 기간 NATO 회원국의 기지가 31개에서 33개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북극 안보를 대폭 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 3. 전망과 시사점

#### (1) 전망

향후 미국은 그린란드 등 북극 지역에 대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향후 4년간 그린란드에 위치한 피투픽 공군 기지(Pituffik Air Base) 시설 현대화를 위해 3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의 정례 북극 군사훈련과 캐나다, 핀란드 등 NATO 북극 연안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2021년 강화된 미국-덴마크-그린란드 3자 안보 협의를 기반으로 향후 그린란드 등 북극에 대한 안보 전략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희토류 등 자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미국은 2020년, 그린란드에 1,210만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제공을 발표하면서 그린란드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왔다. 한편, 중국이 그린란드의 대표적인 희토류 매장지인 크바네피엘(Kvanefjeld) 광산 개발권을 확보한 후, 크라베피엘(Kravefjeld) 지역까지 넘보자 덴마크와 함께 이를 무산시키는 등, 중국의 그린란드 접근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인 그린란드를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고, 2018년 극지 실크로드 계획을 발표하며 자칭 북극인접국 지위를 강조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은 그린란드 자치정부 및 덴마크와 협력하는 한편, NATO 및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내에서 북극해 관련 국제 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2013년과 2018년에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0년대 들어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린란드 등 북극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이 북극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그린란드의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2020년 전 세계 희토류 공급 망의 70%를 차지하던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2023년 61.2%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린란드 및 덴마크, 미국 등과 수입 다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린란드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은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기후 변화 및 환경 보호 연구를 강화하여 북극 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산 기지를 운영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북극의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그린란드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와 극지 운항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란드 등 북극 개발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는 북극이사회, IMO(국제해사기구), UN 국제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다자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